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23조(사무직원의 직무)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1.12.31>

제24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32조, 제34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25조(교육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6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본재산과 적립금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8조(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으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전 20일부터 10일까지 후임자를 선출한다.

④교육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감의 임기)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

제30조(교육감의 사임) 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1조(교육감의 보궐선출) ①교육감이 궐위된 때에는 교육위원회는 궐위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임기를 개시하고 전임자의 임기기간동안 재임한다.

제32조(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겸직의 제한) 교육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교육위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4조(시·도의 폐지·분합과 교육감) ①시·도가 다른 시·도에 편입되어 폐지된 때에는 그 편입된 시·도의 교육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시·도가 합하여서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당해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교육감중에서 지정한다.

④1개의 시·도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시·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교육감은 선출 당시의 시·도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교육감으로서 임기기간동안 재임하고, 다른 시·도의 교육감은 새로 선출된다. 다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⑤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때에는 교육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제3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다.

③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3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또는 출석 교육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소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제3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①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41조제1항의 교육기관 및 제43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또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청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교육장의 분장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5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그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7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48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9조(지도 및 자료제출)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

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지휘.감독등) ①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그 집행의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1조(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52조(지방자치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97조,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는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시.도지사" 및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각각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부 칙 < 91. 3.8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 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면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 받아야 한다. <4>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도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2>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3>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

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35조제4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4>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교육장".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일: 1991/04/23 공포번호: 대통령령제1335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2항에서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2. "교육행정경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경력을 말한다.
3. "교육전문직원경력"이라 함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등록) 교육위원회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교육위원회후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위원회선출일(이하 "선출일"이라 한다) 20일전까지 당해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 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회에서 선출하는 교육위원회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일 10일전까지 당해 시.도의회에 등록하여야 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통
2. 신원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에 한한다)
4. 해임증명서 1통(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후보자의 추천) ①시.군.구의회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의회 의장은 늦어도 선출일 10일전까지 당해 후보자의 교육위원회후보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의회에 후보자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위원의 선출) ①시.도의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또는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

수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한다.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3인 이상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한다.

② 시.도의회는 법 제5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회의 추천에 관계없이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회의 결정으로 다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당선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되,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회의 결정으로 경력자가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력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궐원교육위원의 선출) ① 시.도의회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궐원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궐원된 당해 교육위원을 추천한 시.군.구의회에 기간을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은 궐원된 교육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당선자의 공고등) ① 시.도의회는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자를 공고하고, 투표경과와 당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약력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출일등의 공고) ① 시.도의회 의장은 선출일과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출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 의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이를 시.군.구의회와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9조 삭제 <92.3.25>

제10조(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교육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감사는 매년 10월 20일이후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개정 92.3.25>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교육위원회의 폐회 또는 휴회중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교육위원회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교육연수.수련기관
4. 도서관
5.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6. 각급학교(특정사안과 관련된 학교중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교육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교육.학예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사무직원의 겸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당해 시·도교육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2.3.25>

제15조(교육감의 당선승낙등) ① 교육위원회 의장은 법 제28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을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승낙서를 받고,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선출 당시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육감은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감의 겸직제한등)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을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2.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직원

제17조(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등) ①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뜻을 기재하여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이 경우 조례공포문 전문에는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④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⑤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한 때에는 시.도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에 그 전문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위임규칙) 교육감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내의 구(자치구를 제외한다).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선결처분)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

②교육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처분을 한 때와 선결처분을 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그 처분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 제42조, 제55조 및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으로,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보고, 준용규정 제29조중 "법 제90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0조"로, 제37조중 "법 제19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6항 또는 제38조"로, 제55조중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56조제2항중 "법 제159조제3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제21조(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교育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6호 내지 제12호에 관한 사항
2.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3.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①교育장의 소관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예산의 편성 및 운영) ①교育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育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育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④교育감은 교육청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을 교육청별로 구분하여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안의 심의.의결) ①교육위원회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26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부 칙 < 91. 4. 2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 17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2중 "시.도"를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49조, 제50조,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1조, 제74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91조제1항.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62조 및 제174조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을 각각 "교育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교育장"을 "교育감" 또는 "교育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교育장"을 "교育감"으로 한다. <2>제1항의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은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학년도개시 11월전까지,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수용계획은 당해 학년도개시 23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제3항의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시.도의 조례로,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하며, 체육특기학교의 지정.입학방법 및 그 절차와 지체부자유자의 인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장이 이를 정한다. 제70조제4항중 "시.군 또는 자치구"를 "시.도"로 한다. 제71조의7중 "교육위원회"를 "교育감"으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교사신축등의 보고)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학교중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교사를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교지.체육장 또는 실습지를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 미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중 "시.군 또는 자치구교육장" 및 "교育구청장" 또는 "교育장"을 각각 "교育장"으로 한다. 제9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79조제1호, 제87조제 2항, 제112조의2제1항, 제112조의3, 제112조의4제1항, 제112조의6제1항.제4항, 제112조의7제1항.제2항, 제112조의8제1항.제3항, 제112조의9제1항, 제112조의10, 제11 2조의11제1항.제2항, 제112조의12제1항 내지 제3항, 제112조의14제1항 및 제162조중 "시.도교育장"을 각각 "교育감"으로 한다. 제112조의6제5항중 "교육위원회"를 각각 삭제한다. 제179조 및 제181조중 "교育장"을 각각 "교育감"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시.군 또는 자치

구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3항제6호 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제. 휴직 및 복직 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 위원회"를 "학장징계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제5호중 "교육위원회의 과장이하의"를 "시.도교육행정기관의 과장이하의"로 하고 "또는 교육구청장"을 삭제한다. <2>총장.학장징계위원회는 총장.부총장 및 학장(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학장을 제외한다)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제1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와"를 "학장징계위원회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교육위원회"를 "시.도교육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학장 및 교육감징계위원회"를 각각 "학장징계위원회"로 한다.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 칙 <9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1994. 9 교육부

(이 보고서는 170회 정기국회 보고자료이며, 특수교육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것임).

### I. 일반현황

1. 한국 특수교육의 변천과정
2. 특수교육의 현황
3. 시·도별 특수학교 취학 상황
5. 예산 현황

### II.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1. 장애아동 취학기회 확대
2. 특수교육 연한연장 추진
3. 사설 조기치료(교육)기관의 양성화
4. 특수학교 교원자격 및 양성제도 개선
5.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호봉격차 해소
6. 특수학교 교장자격 추천검정 기준 강화
7. 교원양성대학의 특수교육교과목 설치 권장
8.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9. 특수교육 담당조직 보강
10. 특수학교 특수시설·설비 확충 지원
11. 특수교육 제도 정비를 위한 각종 연구 추진

### III. 기타

1. 특수교육 홍보 강화
2. 국립특수교육원 개원
3. 특수교육 100주년 기념행사
4. 장애학생 대학특례입학 추진

### IV 참고자료

1.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교육부문 중 특수교육)
2. 특수교육의 개념 및 목적
3. 특수교육 관련용어의 정의
- 4) 특수교육대상자 / 2)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 3) 순회교육 / 4) 통합교육 / 5) 교육과정  
6) 개별화교육 / 7) 치료교육 / 8) 직업교육 / 9) 특수교육 교원 / 4. 특수학교 운영비

## ■ 일반연황

### 1. 한국 특수교육의 변천과정

연 도	변 천 내 용
1881	◦ 박정양 등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교육기관 시찰 보고서 중 맹아원을 소개
1885	◦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치아원 맹인원 아원을 소개
1894	◦ 미국인 선교사 R. S. Hall이 평양에서 맹여학생(오복래) 지도 (소학교내 통합교육 형태)
1909	◦ 미국인 선교사 R. S. Hall이 평양에 농학교 설립
1913	◦ 서울에 제생원(양육부와 맹아부)을 설립, 맹자와 농아자에게 보통교육 실시
1914	◦ 제생원에 맹속성과(1년) 설치, 졸업자에게 안마술·침술 영업 허가
1923	◦ 제생원 맹아부 교사 박두성이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 7년간 연구 결과 한글화한 점자 (순맹정음)을 발표
1935	◦ 이창호 모사가 평양에 광명맹아학교 설립
1937	◦ 서울 동대문 공립국민학교에 병허약아를 위한 양호학급 설립
1945	◦ 제생원의 맹아부를 국립맹아학교로 개편 ◦ 이영식 목사가 대구맹학교 설립
1948	◦ 국립맹아학교가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문교부 소관으로 업무 이관(보호자선차원에서 교육사업으로 전환)
1949	◦ 교육법 제정시 특수교육 내용 포함 -특수학교의 교육목적, 각 시·도 1교이상 설립 의무화 -특수학급 설치 근거

### 2. 특수교육의 현황

#### ◦ 장애아동 추정(학령대상 5-17세)

(1994. 4.1)

구 분	전체인구	출현율	교육 대상자	교육조치
경도장애	9,178,811	1.98%	181,740 (72,696)	특수학급, 일반학급 통합교육
계	9,178,811	2.44%	223,963	

※ 경도장애

└ 특수학급 대상(40%) : 72,696명  
└ 일반학급 통합교육 대상 (60%) : 109,044명

#### ◦ 특수학교(급) 현황

구 分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교 원 수	비 고
특수학교	106	2,006	21,262	3,272	중도장애
특수학급	2,665 (578)	3,400 (659)	27,669 (4,870)	3,400 (659)	경도장애
계	2,771	5,406	48,931	6,672	

※ ( )는 중·고등학교 설치 특수학급

3. 시 도별 특수학교 취학상황

(1994. 4.1)

시.도명	학교수	취학희망자	입 학 자	탈 락 자	비 고
서울	18	1.758	1.514	244	
부산	7	516	502	14	
대구	8	429	429	.	
인천	5	352	319	33	
광주	5	301	301	.	
대전	3	232	212	20	
경기	14	953	785	168	
강원	5	179	178	1	
충북	8	423	399	24	
충남	3	131	129	2	
전북	8	302	302	.	
전남	7	249	249	.	
경북	7	511	431	80	
경남	6	360	351	9	
제주	2	62	62	.	
계	106	6.758	6.163	595	

5. 예산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93				94	비 고 증△감
	예 산 액	예산 현액	지 출 액	불 용 액	예 산 액	
◦국립특수교 육원 설립	369.490	369.490	369.490	.	299.968	△69.522
◦점역교파서 공급	47.220	47.220	39.262	7.958	49.559	2.339
◦특수교육 지원	302.091	289.771	288.968	803	2.294.639	1.992.548
-특수교육 진흥 (요육실)	175.000	175.000	175.000	.	2.175.000	
-실기 및 체육대회	10.382	8.732	7.929	803	8.299	
-육성회 보조	116.709	106.039	106.039	.	111.340	
◦특수교육 운영	15.608	14.500	14.034	466	2.204	△13.404
-특수교육 운영	2.198	1.090	624	466	2.204	
-특수교육 백서 발간	13.410	13.410	13.410	.	.	
계	734.409	720.981	711.754	9.227	2.646.370	1.911.961

## ■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과제>

- 장애 아동의 취학기회 부족
- 특수교육의 질 저하
- 특수교육 지원체계의 미흡

육성시책>

- 장애아동의 취학기회 확대
- 특수교육 연한연장 추진
- 사설 조기치료(교육) 기관의 양성화
- 특수학교 고원자격 및 양성제도의 개선
-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호봉격차 해소
- 특수학교 고장자격 추천검정기준 강화
- 교원양성대학의 특수교육교과목 설치 권장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 특수교육 담당조직 보강
- 특수학교 특수시설 설비 확충 지원
-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추진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추진

### 1. 장애아동의 취학기회 확대

문제점>

- 특수학교(급) 수용율 저조: 42.6%
  - 중도장애인: 42.223명, 취학자수 21.262명 (50.4%)
  - 경도장애인: 72.696명, 취학자수 27.669명 (38.1%)
- 특수학교 신설상의 애로사항
  -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한 부지매입 곤란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
  - 농·어촌지역의 경우 오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부모들의 반대
  - 시·도 예산 총괄배정이후 공립 특수학교 설립추진전무
-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학부모 및 일반교사등의 인식부족
  - 특수학급 수용에 대한 학부모의 기피
  - 특수학급에 대한 일반교사의 협조 부족 및 유자격 교원 배치 (63% 미흡)

#### 가. 추진목적

- 연차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2001년까지 장애아동 전원에 대한 교육실시

#### 나. 추진방침

- 대도시내 도심지 학교의 잉여시설을 활용한 특수학교 병설 추진
-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설 적극 활용
- 교육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한 시·도에 학교신설비를 지원하면서 시·도간 균형 유지
-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수용시설 포함)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기회 제공
-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운영개선을 통한 장애아동의 취학기회 확대

#### 다. 추진계획

- 도심지 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교 병설모형 개발 (시·도)
- 소규모학교 통·폐합시설을 활용한 특수학교 신설 (시·도별 1교 이상)
- 교육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도에 매년 1~2개 정도의 학교 신축비를 특별 교부금에서 지원
  -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신축 가능 예정지를 조사한 후 지원
- 장애인 이용·수용시설에 대한 분교(장) 설치 확대
  - 시·도당 1개소(서울 2개소) 설치 권장
  - 운영성과 분석 후 반응이 좋을 경우 점진적 확대 추진(106개소)
-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 및 확대 설치
  -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의 인식 제고
  - 설치 대상 학교 확대
    - 특수학급 설치 대상 기준 조정

구분	설치 기준	비고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학급이상 규모의 학교로서 잉여교실이 있는 경우 2학급 이상 설치</li> </ul>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수 800여명 이상 학교 : 2학급 이상</li> <li>- 학생수 400~800명 미만의 학교 : 1학급</li> <li>- 그외 학생수 400명 미만일지라도 설치가 요구되는 학교 : 1학급</li> </ul> </li> <li>* 단, '97년 이후는 위 기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수는 학생의 장애정도, 시설, 교사 등의 여건에 따라 조정</li> </ul>

#### 라. '94 추진실적

- 특수학교 신설 추진 : 3개교

- 경남은광학교
  - 위치 : 경남 창원시 삼동동 24번지
  - 장애영역 : 지체부자유 · 정신지체
  - 예산 : 교부금 7,372백만원, 계 7,372백만원
  - 개교예정일 : '95. 3. 1
  - 진척도 : 부지확보 및 관련기관과 협의중
  - 수용인원

구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계
95년도	2학급 20명	6학급 90명	2학급 30명	2학급 30명	12학급 170명
98년도	2학급 20명	12학급 180명	6학급 90명	6학급 90명	26학급 380명

- 경기성은학교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 택지개발지구내
  - 장애영역 : 정신지체
  - 예산 : 교부금 2,578백만원, 자체부담 713백만원, 계 3,291백만원
  - 진척도 : 60% 완성(2층 골재건축중)
  - 개교예정일 : '94. 9. 1 (공사진척관계로 '95년초로 연기)
  - 수용인원

구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계
94년도	1학급 10명	6학급 90명	3학급 45명	3학급 45명	13학급 190명
95년도	2학급 20명	12학급 180명	6학급 90명	6학급 90명	26학급 380명

- 대전혜광학교
  - 위치 : 대전시 동구 가오동 산 13
  - 장애영역 : 정신지체
  - 예산 : 교부금 : 3,037백만원, 자체부담 2,179백만원, 계 5,216백만원
  - 개교예정일 : '95. 3. 1
  - 진척도 : 35%(94년 12월 준공 예정)
  - 수용인원

구분	유치부	초등부	중학교	고등부	계
95년도	1학급 10명	7학급 105명	1학급 15명	1학급 15명	10학급 145명
2000년도	1학급 10명	12학급 180명	3학급 45명	3학급 45명	19학급 280명

- 국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94-97)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331(특수학교 용지)
  - 장애영역 : 정서장애
  - 소요액 : 98억원
  - 개교예정일 : 97. 3
- 특수학급 증설 : 79개 학급
  - 94년 3월 부분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내 설치
- 조기교육기회 확대
  - 94.3-12 특수유치원 시설 · 설비기준 마련 후 인가
- 장애인복지시설내 특수교육 실시 권장
  - 보건사회부, 시 · 도교육청
  - 대상인원 : 8,047명 (수혜자 4,0370명, 미수혜자 3,677명)

## 2. 특수교육 년한 연장 추진

### 문제점>

-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고도화되고 있는 직업기술 수준에 적응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초직업 교육기간 필요
- 현재 고등부 졸업후 사회로 진출할 경우 기술수준 미흡 및 직업생활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직업생활 적응 곤란
- 장애인의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저조로 인한 열등의식 잔존
  - \* 장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연한 연장 필요

### 가. 필요성

-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취업구조의 다양화
  - 단기간내 많은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 곤란
- 장애인의 신체적 ·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일반대학 입학기회 저조
  - 일반인과의 경쟁의 경우 상대적 열등의식 심화
  - 일반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취약

### 나. 선진각국의 실태

- 일본 : 유 · 초 · 중 · 고등부에 이어 전공부 운영
  - 전공부 : 1-3년 과정
  - 학령기간 : 18-20세
  - \* 2년제 단기대학 1교 운영
- 미국 : 유 · 초 · 중 · 고등부 외에 연계교육으로 직업생활 교육과정 운영
  - 학령기간 : 18-21세

- 근거 : 전장애아교육법(미국공법 92-142 : '75. 11. 29)
- 고등학교 이후 교육기간은 직업생활 적응교육임
- \* 4년제 청각장애인대학(Gallaudet 대학) 1교 운영

#### 다. 추진계획

- 전공과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 '92 - '94년중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 전공과 교육과정 마련 : '94년중

#### 예상되는 문제점>

맹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상 자극요법의 일환으로 3호이하 (소위 호칭)의 침술교육을 시시하고 있으나, 현재 맹인의 침구사 면호증 제도가 없어 침술행위가 불법행위로 판결(보사부에서는 3호이하는 가능하다는 해석)되어 전공과정 설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침구사 면호증 제도 5.16이후 폐지: 시각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보호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협조요청 예정

#### 라. 추진실적

- 전공과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 '92. 12. 8 교육법 제143조의 2의 (전공과의 설치) 조항 신설
  - '94. 1. 7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의 (전공과의 설치) 조항 신설
- 전공과 교육과정 마련
  - 전공과 실험학교 운영
    - 실험학교 : 서울맹학교(시각장애), 한국선진학교(정신지체)
    - 연구공개 : '94. 10월 (예정)
  - '95년 시·도별 중심 특수학교에 전공과 설치 권장(수업연한 1-2년)
- 전공과 시설·설비 예산지원계획
  - 재원 : 장애인고용촉진 부담금(노동부)
  - 소요액 : 89억원 ('95-'98)

### 3. 사설 조기치료(교육)기관의 양성화

#### 문제점>

- 대도시 등지에서 특수교육 등의 명분하에 고액의 수강료를
  - 수강료 : 월 10-30만원(일부지역은 담합)
  - 주당 3-5일, 하루 1-2시간 정도 지도
- 교육행위 또는 의료행위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유사업소 계속증가추세

#### 가. 필요성

- 장애유아의 조기치료·교육기회 확대 제공을 통한 장애의 조기경감 및 치료의 극대화
- 고액의 수강료 부담에 따른 학부모의 가계압박 해소 및 질적으로 안정된 교육 서비스 제공

#### 나. 운영실태

#### ◦ 업소현황

('94. 4. 1)

시·도별	복지시설	종교단체	병(의)원부설	언어 치료실	그외 사설기관	계
서울	10	12	5	11	46	84
부산	2	2	.	6	5	15
대구	.	1	.	.	8	9
인천	.	3	.	.	7	10
광주	5	.	2	2	6	15
대전	3	1	.	2	5	11
경기	1	5	.	.	18	24
강원	1	.	1	.	2	4
충북	.	1	.	.	2	3
충남	.	.	.	.	1	1
전북	4	.	.	.	6	10
전남	.	.	.	.	1	1
경북	.	.	.	.	4	4
경남	1	.	.	1	5	7
제주	.	.	.	.	1	1
계	27	24	8	22	117	199

\* 교육행위 또는 의료행위인지 구분 모호, 일부지역 수강료 담합 사례

#### 다. 추진방침

-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등록후 학원으로 인가 운영

- 유치원 설립조건을 갖춘 경우 특수유치원으로 인가후 운영

#### 라. 추진계획

-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교육소로 등록토록(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개정 : '94 - '95
- 자체 재산으로써 설립조건을 갖춘 경우 특수학교(유치부)로 인가토록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등 관계법령 개정 : '94년중  
-유치부만을 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시설·설비기준 수립 추진 : '94.10 - 12

#### 마. 추진실적

- '94. 3 장애유아교육 담당교사 양성 의뢰(교원지원국)
- 관계대학 7개교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대학교, 전주우석대학교)

### 4. 특수학교 교원자격 및 양성제도의 개선

#### 문제점>

- 특수교사 자격증의 단일화로 인한 현직연수기회 부족 및 사기 저하
  - 자격구분
- 특수학교 교사 : 정교사
- 일반학교 교사 : 정교사(1·2급), 준교사
  - 현직연수 : 일반교사에 비해 일반연수는 1회 적으며, 자격연수는 기회 전무
  - 호봉책정 : 일반교사는 상위자격 취득시 1호봉씩 가산 재획정
- 특수교사 자격취득 기회의 부족으로 잠재적인 유능 인력 활용 불가
  - 자격취득방법
- 특수학교 교사: 대학 특수교육과 졸업, 자격시험 등 2종류
  - 일반학교 교사 : 교대, 사대의 초등교육과정,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교원양성기관 수료, 자격시험 등 7종류
- 일반학교 교장(감)에 비해 특수학교 교장(감)의 상대적 불이익
  - 특수학교 교감의 교장 승진 연수과정 부재
  - 일반학교 교장(감)은 특수학교 근무가 가능하나 특수학교 교장(감)은 일반학교 근무가 불가능(교육법 별표 2)
- 특수교사 양성대학간 전공과목에 대한 수업시간수의 차이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의 차 발생
  - 표준화된 능력본위 교사양성 교육과정 필요

#### 가. 필요성

- 특수학교 교사의 사기진작을 통한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 일반학교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의 현직 연수 및 상위자격 취득기회 균등보장
- 교사양성기관간 전공과목의 수업시간수 차이로 인한 교사의 직무능력차 해소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교장(감) 자격기준상의 불균형 시정

#### 나. 교원 양성관련 제도

- 교사자격 및 양성제도의 비교

구분	자격증	양성방법	교육과정의 표준화 여부
일반학교	정교사(1.2급)준교사	교대, 사대의 초, 중등교육과정,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의 초, 중등교육과정,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자격시험 등 7종류	표준화
특수학교	정교사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 자격시험 등 7종류	비표준화

#### o. 교장(감)자격기준 현황(교육법 별표 2)

- 일반학교 교장(감)은 즉시 일반학교 교장(감)은 자격취득 가능
- 특수학교 교감의 특수학교 교장자격 직접 취득 불가능
- 특수학교 교감의 특수학교 교장자격 직접 취득 불가능

#### 다. 추진방침

- 특수학교 교사자격 구분을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조정
-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법의 다원화
- 대학(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의 표준화를 통한 교사능력의 평준화 유도
- 교장·교감 자격기준상 불균형 규정 개정
  -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의 직업교육, 치료료교육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반학교 관리자로도 상호 전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라. 추진방침

- 특수학교 교사자격 구분의 세분화
  - 정교사(1.2급), 준교사로 세분(요육교사 포함) 및 유치부 자격기준 신설
  - 관계법령 개정: 92년중
  - 교육법 「별표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 1」

#### o.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일반학교 교사들도 적정한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추가

- 추가내용 : 대학원 또는 교육대학원 전공자,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일반교사자격증 소지자 보수교육
  - 관계법령 개정 : '92년중
  - 교육법 「별표 1」
- 대학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정의 표준 모형 제시: '94 - '95
- 교장·교감 자격기준상 불균형 시정을 위한 법령 개정 : '92년중
  - 교육법 「별표 2」

- 특수학교 교원의 상대적 불이익 내용 수정
- 특수학교 교장·교감도 일반학교의 교장(감) 자격취득 가능
- 특수학교 교감 자격소지자도 교장 승진연수 가능

#### 마. 추진실적

- 특수학교 교사자격 구분의 명문화
  - 특수학교 교사 정교사(1.2급), 준교사로 세분 단계화
  - 일반학교 교사 특수교사 자격취득기회 부여
  - 93. 2. 18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 개정
  - 92. 12. 8 교육법 「별표1」 개정
- 특수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 94 추진중
- 교장·교감 자격기준상 불균형 시정
  - '92. 12. 8 교육법 「별표1」 개정

### 5. 특수학교 담당교사의 호봉격차 해소

문제점>

- 동일대학, 학과를 졸업한 교사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우 급여호봉이 1호봉 낮음에 따른 불만
  - ※ 특수교육과 출신 신규교사 배치시 호봉 확정 비교
    - 특수학교 : 10호봉
    - 특수학급 : 9호봉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 가. 필요성

- 동일 교육과정 및 수학연한(4년)을 이수한 교사들이 실제 학교에서 아동을 지도함에 있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교사가 특수학교에 배치된 교사보다 1호봉이 낮은 대우를 받는데 대한 불만 해소

#### 나. 추진방침

- 동일자격·수학연한이므로 특수학교 교사와 같은 호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

#### 다. 추진계획

- 호봉격차 해소를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3」 개정 : '94 - '95

#### 라. 추진실적

- 호봉격차 해소를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추진중 : '94. 9월 현재

### 6. 특수학교 교장자격 추천검정기준 강화

문제점>

- 사립교(72교)의 교장중 65%(47명)가 교장자격 추천검정으로 자격취득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 추천검정기준 중 감경기준을 85년에 추가하여 교육경력이 없는 설립자, 직계후손 등이 대거 진출
  - 감경기준에 의거 교장자격을 인가할 경우 기존 교장·교감의 의도적인 면직 면직 사례 발생 우려
  - 사립학교 교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

#### 가. 필요성

- 사립특수학교 교장 상당수(65%)가 감경기준에 의거 교육경력 없이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겨우 기존 교장·교감의 면직사태 등을 우려하는 현 장교사들의 불만요인 해소

#### 나. 현황

- 교장자격 추천검정에 의한 추천검정에 의한 자격취득 현황

(1994. 4)

구 분	사립학교장수	추천검정자수	비 고
인 원	72	47(65%)	

- 교장자격 추천검정의 법적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 일반기준 : 대졸자로서 7-9년 교육경력 소지자
  - 감경기준 : 기술학교, 특수학교에만 근무하고자 하는 때 (설립자로서 고졸이상의 학력과 학교 운영경력 5년이상)
    - ※ 감경기준 : '85년 제정

#### 다. 추진방침

- 일반학교와 형평차원에서 일반기준은 존치시키되 감경기준은 삭제하여 교사불만 요인 사전 제거

#### 라. 추진계획

- 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중 감경기준 삭제를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개정 : '93

#### 마. 추진실적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교장(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개정 : '93. 2. 16

### 7. 교원양성대학의 특수교육교과목 설치 권장

문제점>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일반학급 교사의 소양 부족
  - 교육목표 : 경도장애학생의 60%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실시
  - 직전교육기관(일반대학,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상 장애아동 지도관련 과목 부재

- 가. 필요성
- 특수교육대상자 중 경도장애아동의 일부는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 실시
  -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소양 미흡

- 나. 추진방침
- 특수학급이 미설치되었거나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별화 지도를 위한 일반교사 지도능력 제고

- 다. 추진계획
- 교육(사범)대학 교육과정 조정 : [특수교육학 개론 또는 특수아 지도론] 과목개설 권장
  - 교직과정 이수과목에 [특수교육학 개론 또는 특수아 지도론] 과목개설 권장

- 라. 추진실적
- 교육(사범대학)교육과정 조정
    - 교육대학 : '93년도부터 조정 실시
    - 사범대학 : 과목개설 권장 추진 중
  - 교직과정[특수교육학 개론 또는 특수아 지도론] 과목개설 권장

## 8.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 가. 목적
- 특수교육 담당교원으로서의 품성도야 및 교과지도에 관한 전문성 제고
  - 외국의 특수교육 제도의 현장교육 비교·연구기회의 확대·제공
  -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사기진작

- 나. 연수종류
- 일반연수
    - 연수대상 : 특수교육 담당교원
    - 연수내용 : 특수교육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일반교양 함양
  - 자격연수
    - 연수대상 : 특수교육 담당2급 정교사
    - 연수내용 : 1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수교육 전공 심화
  - 국외연수
    - 연수대상 : 특수교육 담당교원
    - 연수내용 : 외국의 특수교육 제도와 현장교육 비교연구

- 다. 추진계획
- 일반연수

- 대상인원 : 4회, 480명
- 기간 : 94.7.4 ~ 10.27
- 자격연수
  - 대상인원 : 2회, 200명
  - 기간 : 94.7.28 ~ 95.1.26
- 국외연수
  - 대상인원 : 40명(1기 20명, 2기 20명)
  - 기간 : 94.8 ~ 9 월중

라. 추진실적

- 일반연수
  - 수료인원 : 1기, 110명
  - 기간 : 94.7.4 ~ 7.14
- 자격연수
  - 수료인원 : 1기, 91명
  - 기간 : 94.7.18 ~ 8.22
- 국외연수
  - 연수인원 : 37명
  - 연수대상국
    - 미주 : 미국, 캐나다
    - 아주 : 일본,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 연수기간 : '94.8 ~ 9

## 9. 특수교육 해당조직 보강

문제점>

- 장애별·과정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 및 특수교육 기관의 증설, 관련영역의 개선 등 업무처리 소극적
-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장학협의, 행정협조 등 특수교육 운영상 애로

\* 장애인 관련 중앙부처 직제

부처명	직제명	업무	설치년도
교육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의무교육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과	학교보건, 특수교육 장애인복지 장애인직업재활	1978 1981 1990

#### 가. 필요성

- 특수교육 담당조직 미설치에 따른 업무추진의 비효율
- 장애별, 과정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성 및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보강

#### 나. 현황

- 특수교육기관

구분	'81	'94	증가율(%)
특수학교	61교(760학급)	106교(2,006학급)	174
특수학급	207교(414학급)	2,665교(3,400학급)	1,287

#### • 외국의 예

국가	직제	비고
미국	특수교육국	주정부 : 특수교육국
영국	특수교육과	
일본	특수교육과	
뉴질랜드	특수교육과	주요지역 : 특수교육센터 운영
필리핀	특수교육위원회	

#### • 기타 참고사항

- 대통령공약사업 : 특수교육 담당조직 설치('87. 18-09-25)
  - 대통령에 대한 건의 ('92. 3. 7 경북초도순시시)
    - 건의자 : 배연창 (안동영명학교 교장, 사회사업유공자로 참석)
    - 내용 : 특수교육 담당조직 설치(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 ※ 특수교육 담당조직 설치건의는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음

#### 다. 추진방향

- 교육부(보통교육국) : 인력 및 조직보강
- 시·도교육청 : 계단위 장학관 배치

#### 라. 추진계획

- 교육부 인력 및 조직 보강 : '94년 6~7월
  - 정원증원 또는 과단위 조직 설치 : 관계부처(총무처, 경제기획원)와 협의추진
- 시·도교육청 : 특수교육 담당장학관 배치
  - 장학관 15명만 추가. 장학사는 지역교육청에 기하 배치된 인력 활용
  -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개정('92년 상반기중) : 관계부처(총무처, 경제기획원)와 협의 추진

#### 마. 추진실적

- 교육부 인력 및 조직 보강 : '94. 5. 16
  - 교육부 : 유아특수교육담당관실 설치(교육연구관 1명 증원)
- 시·도교육청 : 특수교육 담당장학관 배치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 1명 추가배치 : '94. 4

#### 10. 특수학교 특수시설·설비 확충 지원

##### 문제점>

- 직업보도실, 요육실 등 시설·설비 부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의 주된 영역인 직업교육 및 치료교육 활동의 위축
  - 예산 총괄배정에 따른 신규투자 미약

##### ※ 시설 확보 현황

구분	확보		추가 소요	
	학교수	확보실	학교수	소요실
요육실 (2인이상)	72 (68%)	154	34	68
직보실 (4실이상)	32 (30%)	155	74	89

##### • 통학편의 제공 미흡으로 특수학교 운영상 애로

- 기숙사 시설 및 통학버스 부족으로 특수학교 운영상의 애로
- ※ 통학편의 시설 확보 현황

구분	확보		추가소요
	학교수	면적	
기숙사	33교	39개교	
	면적	20,152m <sup>2</sup>	34,916m <sup>2</sup>
	수용인원	2,887명	3,469명
통학버스	88교	66교	
	대수	158대	111대
	수용인원	8,970명	6,393명

#### 가. 필요성

- 특수교육 현장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 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설·설비의 확보지연 및 교육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특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요구됨

#### 나. 추진계획

-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요육실·직업보도실 설치지원 확대
  - 설치기준: 요육실 2실, 직업보도실 4실 이상
  - 대상: 국·공·사립교 중 부족교(요육실 68실, 직보실 89실)
  - 소요예산: 7.787백만원
- 기숙사 증축비 및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
  - 기숙사 증축: 학생정원의 1/3 수용 목표 (39교, 10.580평)
    - 소요예산액: 11.532백만원
  - 통학버스 구입: 실제 필요량(대형 111대) 지원
    - 소요예산액: 3.930백만원

#### 다. 추진실적

- 치료교육 내실화를 위한 요육실 설치 지원
  - '94년 29개교 68실 지원 (2.175백만원)
-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보도실 설치 지원 예산요구
  - '95 예산안: 50실 22억원 계상

### 11. 특수교육 제도정비를 위한 각종연구 추진

#### 가. 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 제정

##### 1) 필요성

-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특수교육의 특성에 부합되는 설비기준의 마련으로 특수교육의 내실화 추구
- 특수학교에 필요한 교구·설비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촉진
- 각종 현황조사, 시설·설비의 확충, 정비의 지표로 활용

##### 2) 관련근거

- 교육법 제85조 (학교의 설치, 폐지), 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 (시설, 설비)
-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교지), 제4조(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 (문교부 고시 제89-10호, '89.12.29)

##### 3) 추진방침

- 기준 제정 대상은 특수학교(급)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구·설비로 함
- 현행 학교교구·설비기준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특수학교(급)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함
- 특수교육의 교재·교구 및 보장구의 발달 추세에 맞는 기준 설정
- 제반 기준 설정은 특수학교(급)의 교육과정 이수와 교육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외에 직업보도·훈련시설, 요육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설비로 규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제시된 시설 범위내에서 필요한 내부설비 설정

#### 4) 추진실적

- '94.3.18 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 제정 세부계획 수립
- '94.3 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 시안 작성
- '94.3.22~3.29 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 시안에 대한 검토
- '94.4.15 특수학교교구·설비기준 제정에 따른 관계관 회의
- '94.4.25~5.30 특수학교 교구·설비기준 제정에 따른 관계관 회의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 '94.6.1~6.15 의견조회 사항 내용 검토
- '94.7.30 제정초안 작성
- '94.8.30 제정시안에 대한 확보율 표본조사
- '94.9.20 재정안 확정 (예정)
- '94.12 관보게재 및 기준 배포 (예정)

#### 5) 주요내용

- 운동장, 보통교실, 특별교실, 시청각교실, 도서실, 상담실, 양호실 등의 설비기준을 정함
- 교구에 대하여서는 학교교구에 준용하도록 함
- 직업보도·훈련시설 및 요육시설에 대한 설비기준을 마련함
-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현황을 보고토록 함

#### 나. '93 교육정책 연구과제

##### 1) 주제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전달체계 모형과 적정 학습집단 규모 산출

##### 2) 연구의 목적

- 개인의 잠재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교수·학습전달체계 모형의 구안
- 교수·학습전달체계 모형에 따른 학급인원수의 적정규모 탐색

##### 3) 연구의 내용

- 교수·학습전달체계 모형 연구
  -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되, 특히 개별화교육 수행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에 중점
  - 교수·학습전달체계 모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수에 대한 연구
  - 장애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 과정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 4) 연구방법 및 일정

- 연구방법
  - 교수·학습전달체계 모형 연구
  - 문헌 연구
    - 모형 구안후 전문가 워크샵 및 체크리스트 활용
  - 모형별 적정 학급규모의 연구
  - 문헌연구 및 각국 상황 조사
  - 전문가 워크샵 수행

◦ 연구일정 : '93. 9. 1 ~ '94. 8. 30

#### 5) 연구자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정권 외 6명

#### 6) 기대효과

- 특수학교(급) 교육의 교수 개별화를 촉진하여 아동의 소질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학교체제 시사
- 교수-학습집단의 적정규모 산출로 장애정도 및 능력수준에 알맞는 집단구성 기준 제시
- 교사용지도서, 프로그램 제작방향과 학급당 인원수를 규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12.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가. 필요성

- 1977년 제정·공포 이후 2차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대두
- 특수교육 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나. 추진방안

- 특수교육진흥법 내용, 체계 등 전면 재검토
- 교육현장, 학계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및 반영

#### 다. 추진실적

- '92.4~'93.2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한 개정안 수립
- '93.3~5 개정안 확정
- '93.6~8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93.9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제출
- '93.11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민주당) 동시 심의
- '93.12 국회(교육위원회) 공청회 개최
- '93.12.17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대안) 수립, 본 회의 통과
- '94.1.7 법률 제4.716호로 개정·공포

- '94.2~5 동 시행령 개정령안 초안 작성
- '94.6 동 시행령 개정령안 관계부처 협의
- '94.7 동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94.8 동 시행령 개정령안 법안조정

- 체제  
- 16개조(현행) → 5장 28개조(개정안)  
[ 정부입법안 : 8장 20개조  
[ 의원입법안 : 6장 42개조 ] ]

- 개정내용 요지  
장애아동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개별화교육·통합교육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특수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함

### III. 기타

#### 1. 특수교육 홍보 강화

##### 가. 목적

- 특수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제고
- 우리나라 특수교육 제도 및 정책 해외 홍보

##### 나. 추진내용

- 특수교육백서 발간
- 한국의 특수교육(영문판)발간

##### 다. 추진계획

- 특수교육백서 발간
  - 발간방향
    - 한국 특수교육의 성립·발전과정 정리
    - 한국 특수교육의 위상 조망 분석
    - 한국 특수교육 장·단기 발전과제 제시
  - 발간기간 : '92 ~ '93
  - 발간방법 : 법·제도의 시계열적 분석,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 등
  - 발간부수 : 500부
  - 보급대상 :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원양성대학, 전국도서관 등
- 한국의 특수교육(영문판) 발간
  - 발간방향
    - 한국 특수교육의 제도
    - 특수교육관련 법규등 제시
  - 발간기간 : '94. 4 ~ 9
  - 발간방법 :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법규, 제도 및 정책 등 자료수집 정리 후 영문으로 발간
  - 발간부수 : 500부
  - 보급대상 : 제외공관 및 특수교유 유관기관

##### 라. 추진실적

- 특수교육백서 발간
  - 발간시기 : '93. 12. 31
  - 발간부수 : 500부
  - 보급 : 집필자, 특수교육기관, 시·도 및 시·군교육청, 특수교사양성대학, 전국도서관
- 한국의 특수교육(영문판) 발간
  - 발간시기 : '94. 9
  - 발간부수 : 250부

##### 마. 기대효과

- 특수교육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한국 특수교육에 대한 국제적 이해 도모

#### 2. 국립특수교육연수원 개원

□ 일반현황

가. 기능

-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 특수교육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 특수교육 담당교원 등의 연수

나. 연혁

1994. 5. 16 국립특수교육원 설립(대통령령 제14264호)

└ 원장 : 장학관

└ 정원 : 28명

\* 개원 : 1994. 7. 20 (수)

다. 시설 현황

위치	대지	건축면적	비고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723-2	1,860m <sup>2</sup>	2,442m <sup>2</sup> (739평)	4층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라.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교육전문직			일반직						계
	장학 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 관	교육 연구 사	소계	5급	6급	7급	기능 직	소계	
정원	1	1	13	15	1	1	2	9	13	28
현원	1	-	10	11	1	1	2	9	13	24

마. 예산

구분	94 예산액	구성 비(%)
총계	879,135	100
1. 인건비	284,481	32.4
2. 기준경비	70,990	8.1
3. 관서운영비	25,017	2.8
4. 사업비	498,647	56.7
가. 특수교육연구 및 학습자료개발	133,124	
1) 발달장애인 진단검사도구 개발	36,366	
2) 정서장애인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25,786	
3) 특수교육 홍보지 발간	24,368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	19,968	
5) 시각장애인 교육자료 개발	26,636	
나. 특수교육담당교원	125,473	
1) 일반연수	59,920	
2) 자격연수	65,553	
다. 일반행정 지원	240,050	

□ 주요업무 추진 계획

가. 특수교육 연구 및 학습자료 개발

1) 발달장애인동 진단검사도구 개발

가) 목적

- 발달장애인동의 정확한 교육적 요구 평가
- 발달장애인동의 개별화 교수 프로그램 기초자료 제공
- 개별화 교육의 일반화

나) 도구의 특징 : 준거 참조형 진단검사

다) 추진 내용

- 개발연구팀 구성(7월)
- 예비검사 도구 제작(8월)
- 예비검사 실시(9월-10월)
- 검사결과 분석 처리(11월)
- 검사도구 제작(12월) : 200부

2) 정서장애인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가) 목적

- 대인관계 등 사회성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지닌 정서장애인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

나) 자료의 특성

- 가정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성 지도의 체계화

- 장애인아동의 개별진단 및 개별화 교육자료 제공
- 장애인아동의 체계적 지도절차 및 방법 제시

다) 추진내용

- 개발연구팀 구성(7월)
- 프로그램 제작(7월-8월)
- 프로그램 현장 적용(9-10월)
- 프로그램 개발 완료(11월-12월) : 2,000부

나. 특수교육 홍보

- 1) 특수교육지 발간  
가. 발간부수 : 1회, 500부

2) 특수교육 논총 발간

- 가.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연구 의욕 고취
- 나. 발간부수 : 1회, 500부

다.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

- 목표 : ◦특수교육 담당교원으로서의 품성도야 및 교과지도에 관한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현장적용을 통한 질적 향상

1) 일반연수

- 가. 연수대상 : 특수교육 담당교원
- 나. 연수인원 : 4회, 480명(7.4-10.27)

- 다. 연수내용 : 특수교육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지식 함양

연수방법	강의	참여식					행정평가	계
		조사연구	토의발표	실기실습	현장실습	소계		
시간수	37	2	13	4	2	21	2	60
비율	62%	3%	22%	7%	3%	35%	3%	100%

2) 자격연수

- 가) 연수대상 : 특수교육담당 2급 정교사

- 나) 연수인원 : 2회, 200명('94. 7. 18 - '95. 1. 26)

- 다) 연수내용 : 1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수교육 전공 심화

연수방법	강의	참여식					행정평가	계
		조사연구	토의발표	실기실습	현장실습	소계		
시간수	108	2	37	30	1	70	2	180
비율	60%	1%	21%	17%	1%	39%	1%	100%

3. 특수교육 100주년 기념 행사

가. 취지

우리나라 근대식 특수교육 실시 10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수교육의 내실화 및 장애학생의 사기양양 도모

※1894년 평양에서 미국 감리교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여사가 맹소녀(오복래)에게 점자를 통한 특수교육을 실시한 것을 근대식 특수교육의 시작으로 봄.

나. 주최

한국특수교육협회(회장 김영환, 국립특수교육원장)

다. 후원

교육부, 문화체육부, 국방부, 보건사회부, MBC,KBS,SBS,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삼성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라. 주요행사 개요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1.전국심신장애인아음악 경연대회	94.5.19(목) 09:00-16:20	한국어린이육영회강당	◦한국특수교육협회 ◦한국어린이육영회
2.특수교육100주년 기념엽서 발행	94.5.20(금)		◦체신부 ◦50만부 발행
3.편지쓰기대회	94.5.20(금) 09:30-10:20	전국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한국특수교육협회
4.100주년 기념식 및 모범 교원·학생 표창	94.6.14(화) 10:30-12:00	상무종합운동장 선승관	◦한국특수교육협회
5.전국특수학교 학생 체육대회	94.6.14(화) 13:00- 6.16(목) 14:00		◦교육부 ◦한국특수교육협회
6.전국심신장애인작품 전시회	94.10.25(화) 10:00-18:00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한국특수교육협회 ◦한국어린이육영회
7.전국특수학교학생 실기대회	94.10.26(수) 10:00-17:00	서울맹학교 서울선희학교	◦교육부 ◦한국특수교육협회

마. 참가대상

- 전국특수학교(급) 재학생
- 전국특수학교(급) 교원
- 특수교육 유관기관 종사자
- 학부모

#### 바. 부처별 지원내용

관계부처	지원내용	비고
교육부	°100주년 관련 각종 행사 후원 °장관 치사 °전국특수학교 학생체육대회 및 특수학교 실기대회 공동 주최 및 소요경비 일부 지원 °교원 및 학생참가 권장 유도 °모범교원 및 학생표창(교원 43명, 학생 138명)	
국방부	°전국특수학교 학생체육대회 후원 °전국특수학교 학생체육대회 관련 행사장 및 행사요원 지원	
문화체육부	°전국특수학교 학생체육대회 후원 °전국특수학교 학생체육대회 경비 지원	
KBS.MBC. SBS	°100주년 기념행사 보도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 홍보	
체신부	°특수교육 100주년 기념엽서 발행	50만부

#### 사. 소요경비

행사명	소요예산	지원부처 및 기관	비고
1.전국심신장애인아음악경연대회	24,000	°한국어린이육영회	
2.전국특수학교학생체육대회	112,054	°교육부 °문화체육부 °한국특수교육협회	°교육부 : 4,054 °문화체육부 : 105,000 °한국특수교육협회 : 3,000
3.전국심신장애인아작품전시회	26,000	°한국어린이육영회	
4.전국특수학교학생실기대회	4,245	°교육부	
계	166,299		

#### 4. 장애학생 대학특례입학 추진

##### 가. 추진경위

- 장애자복지정책위원회 건의(89)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일정비율 장애인의 정원외 입학허용
- 대통령 공약사항 :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25-06-23-3B)
-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원 외 특례입학제도 신설 계획 대통령께 보고  
(94.1.24 교육부 업무보고서)

##### 나. 필요성

- 장애인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가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교육법 제9조)를 보장하기 위한 평등조치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들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 박탈 해소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과 일반학생 교육과정의 차이 고려
  - 특수학교 교육과정 :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으로 편성
- ※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의 약 48%를 직업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
-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입시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한계가 있음
  - 평가도구나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장애인들의 선발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 다. 추진방침

-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95학년도부터 현 행의 대학입학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이 특례입학으로 인하여 일반학생들의 대학 입학기회가 제한 되지 않도록 특례입학 인원은 정원외로 인정
- ※ 특례입학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입학방법에 의한 진학기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장

##### 라.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 1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중의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2가지 이상의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자

##### 마. 기대효과

- 장애인에게도 대학입학 기회가 대폭 확대됨
-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입학허용에 소극적이었던 대다수 대학들이 이들을 위한 교육 및 편의시설의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특수교육 도입 100주년에 즈음한 적극적인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인 위주의 정책, 제도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능력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재활에 기여
-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에게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사회적 유대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복지사회의 기반을 활성화 나감

##### 바. 문제점

- 현재의 대학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단시일내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 ※ 일부 종교계 대학에서는 제도 신설시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비공식으로 표명
-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고 동정적 차원에서 특례를 주는 것이라는 일부의 비난 소지
- ※ 일반 입학방법에 의한 대학진학 기회는 계속 보장

#### IV 참고자료

1.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교육부문 중 특수교육)

2. 특수교육의 개념 및 목적

3. 특수교육 관련용어의 정의

1) 특수교육대상자

2)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3) 순회교육

4) 통합교육

5) 교육과정

6) 개별화교육

7) 치료교육

8) 직업교육

9) 특수교육 교원

4. 특수학교 운영비

1.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교육부문 중 특수교육)

□기간 : 1992 ~ 1996

□내용요약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특수·영재교육

1. 특수교육의 진흥

가. 특수교육 기회 확대

1) 특수학교 및 학급증설

◦ 특수아동에 비해 특수학교가 부족함으로 지역적인 안배와 장애영역을 고려하여 '96년까지 19개의 특수학교를 증설한다.

◦ 경도장애인을 일반학교에 수용하기 위하여 96년까지 1,8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 중증장애인들도 일반학교내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닐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보완하며,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 학교에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이나 특수학교 단위에서 순회교사제를 확대하고, 현재 전국에 12명밖에 없는 순회교사를 '96년까지 290명을 확보하여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최소한 1명의 순회교사를 배치한다.

2) 특수아동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고등부를 마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별로 국립특수학교내에 직업 전공부(1~2년제)를 설치·운영한다.

◦ 국립특수교육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장애영역별로 적합 가능한 직종을 연구·개발하고, 각 직종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제공한다.

◦ 국립특수교육연구원에서는 현장실습 훈련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나.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립

1) 특수교육 행정 및 연구 지원체제의 확충

◦ 교육부의 보통교육국에 '특수교육담당관'을 두며,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계를 설치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92년에 국립특수교육연구원을 설치하여 특수교육 연구,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교원양성·연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 담당교원 양성 및 재교육 강화

◦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다.

◦ 특수교육과 출신자에게는 특수교육 교사자격증을 장애영역의 구분없이 특수교육 2급정교사 자격증 발급하도록 하고 1급 정교사과정부터 장애영역별 구분을 통한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공통과정과 장애별 전공과정에 대하여 국가적 수준의 표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3) 장애유아 조기교육 기회 확대

◦ 장애유아들의 조기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교에 유치부(학급)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95년까지 120개를 증설한다.

◦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 조기교육 센터'를 장애유아 전용유치원등으로 전환하고 센터의 설치를 인가제로 한다.

◦ 사립유치원에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여 계획 기간동안 총 500개 학급까지 확대한다.

다. 특수교육 프로그램 확충

1)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특성에 알맞는 교육용 도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96년까지 교과서 208권과 지도서 146권 총 354권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한다.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

구분	'92	'93	'94	'95	'96	계
교과서(권)	40	40	40	40	48	208
지도서(권)	26	30	30	30	30	146
교수-학습자료(종)	50	50	50	50	50	250

◦ 특수학교의 교수-학습방법 연구·개발 및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10개식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특수학교 시범학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등 장애영역별로 지정·운영한다.

2. 특수교육의 개념 및 목적

가. 개념

◦ 특수교육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에게 그들의 욕구나 특성에 적절한 교

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지도,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교육

#### ◦ 개념의 변화

- 과거의 정의 : 특수교육은 특정 장애아동에게 정규학급 밖에서 전문가가 수행하는 교수활동

- 현대적 정의 : 정규학급 교사에 의해 특수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 학급 활동속에서 수행

※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정의와 현대적 정의가 공존함

#### 나. 목적

◦ 장애를 지닌 아동과 정상아동의 교육목적은 같으며, 다만 장애의 결손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학습방법, 속도, 지도내용 등에 차이가 있음

◦ 근거 : 교육법 제 143조(목적) - 특수학교는 장애인에게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 3. 특수교육 관련용어의 정의

#### 1) 특수교육대상자

##### (가) 대상자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부자유 ⑤ 정서장애(자폐성포함) ⑥ 언어장애

⑦ 학습장애 ⑧ 기타의 장애

(나) 장애인복지법과의 비교

◦ 장애의 종류

법규명	내용
장애인복지법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특수교육진흥법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의 장애

◦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대상의 표현도 달리하고 있음

예)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과 재활법 504조

- 전장애아교육법 : 정신박약, 난청, 농, 약시, 맹, 언어장애,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허약, 학습장애 등

- 재활법 504조 : 정신박약, 난청, 농, 약시, 맹, 언어장애,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허약, 학습장애 등 이외 약물중독자, 알콜중독자 등

(나) 장애인의 호칭에 대한 최근 동향

◦ 미국 능력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ADA) 제정 · 공포

- 전통적 표현: disabled person, mentally retarded child, handicapped individual, the disabled, the handicapped, the blind 등

- 최근 (10년간) 합의된 표현

individual, person, people, citizen 등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미리 쓰고 with a disability, with mental retardation 등 타인과의 다른 특징을 첨가

#### - 이유

◦ 법의 보호대상인 장애인들의 감정 고려

◦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중에 일부에만 장애를 입고 있다는 의미

#### 2)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 (가) 의무교육 실시 근거

◦ 헌법 제 31조 :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은 무상

◦ 교육법 제 8조(의무교육) : 6년의 초등교육, 3년의 중등교육

◦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의무교육 중학교 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 등)

(나) 특수학교 의무교육(무상교육) 대상 및 면제 범위

◦ 의무교육 :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

◦ 무상교육 : 유치원, 고등학교과정

◦ 면제범위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과 통학버스 및 기숙사비의 일부

#### 3) 순회교육

##### (가) 개념

이동능력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지녔거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사가 병원, 학교, 가정 및 기타 시설등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교육

##### (나) 현황

(1994. 4. 1)

시 · 도	교명	관련복지 시설명	과정	교사	학급	학생
서울	삼육재활학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초	1	1	10
부산	동암학교	영광재활원	초	1	1	13
경기	성남수진국교외 6개국교 성광학교	86개 가정방문지 도 한사랑마을	초 초	12 2	12 2	86 27
충북	충덕학교	도종합복지관	유	1	1	8
경북	안동영명학교	도종학복지관, 애명복지촌	초 · 중	4	3	45
제주	영지학교	아가의 집	초	2	2	20
계	13교	93개소	-	23	22	209

(다) 연혁

- 1962 부산직할시교육청이 복지시설에 수용된 중증 지체부자유아동 교육
- 1979 경기도교육청이 중도 심신장애아동 재택방문 교육
- 1992 중증자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교사 파견을 통한 순회방문제 실시 권장
- 1994 전국 6개 시·도 13교 93개소 23명의 방문교사가 209명의 아동 지도
- ※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보완 체제로 도입 운영한 후 장애아동 교육 수혜율이 크게 높아졌음

4) 통합교육

(가) 개념

특수아동을 정상아동 또래 집단과 같은 교육장면, 즉 일반학급에 등록시켜 가능한 한 또래 집단과 상호교류를 시키는 교육

(나) 외국의 동향

유럽은 중증장애인까지 일반학급에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는 주류화 혹은 정상화 교육의 이름으로 추진 중임

(다) 통합교육의 이유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장차 사회적 통합내지 적응을 위하여 결리된 분리교육보다는 가급적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애 아동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함

(라) 통합교육의 조건

- 일반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정비, 일반교사들의 소양 및 현조, 전문적인 특수교사의 배치
- 일반교사의 소양제고: 교사 양성기관 및 협력연수시 특수교육 방법, 지식의 함양

5)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 변천

- 1967 맹학교, 농학교 교육과정 제정·공포
- 1974 정신박약학교(초등부) 교육과정 제정·공포
- 1983 지체부자유학교 교육과정 제정 및 정신지체학교(중·고등부)  
교육과정 제정, 맹·농학교 교육과정 개정
- 1989 특수학교 교육과정(장애별)기준 개정·공포
- 1993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 적용

(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기준의 신·구 대비

공통사항

구분	구	신
교육과정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모호,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유사</li> <li>◦ 학교교육과정의 대체기능-획일화</li> <li>◦ 일반학교 수준의 무리한 목표, 내용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준 성격 강화</li> <li>◦ 학교교육과정 편성 의무화</li> <li>◦ 특성화(신학년 개시 30일전) 장애자의 특성·능력에 맞는 목표의 요구</li> </ul>
교육과정의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의 방향, 교육목표</li> <li>◦ 편제와 시간배당</li> <li>◦ 운영지침</li> <li>◦ 교과활동의 목표 및 내용</li> <li>◦ 요육활동의 목표 및 내용 (문서분량: 역 600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목표</li> <li>◦ 교육활동 및 수업시간 배당기준</li> <li>◦ 교과활동의 목표 및 내용</li> <li>◦ 요육활동의 목표 및 내용</li> <li>◦ 특별활동의 목표 및 내용</li> <li>◦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유의점 (문서분량: 약 250쪽)</li> </ul>
조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부 교육과정 미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부 교육과정 제정</li> </ul>
장애인극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내용의 학교급별 구분 제시</li> <li>◦ 학교급별 구분 분리교육-경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내용의 초·중·고 공통 과정화</li> <li>◦ 학교급별 구분 폐지-개별화</li> </ul>
교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기본교육 소홀</li> <li>◦ 예·체능교육 소홀 (일부과목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과 교육 강화 (내용, 시간 강화)</li> <li>◦ 예·체능 교과 필수화</li> </ul>
직업자립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부 전문교과 획일화</li> <li>◦ 지역특성, 학교설정 도외시</li> <li>◦ 단위배당·운영의 경직화</li> <li>◦ 직업교과 이수시간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과의 학교 특성화</li> <li>◦ 지역특성, 학교설정 고려</li> <li>◦ 전문교과목의 단위배당재량권 부여</li> <li>◦ 학교별 특설과목 설정권 부여</li> <li>◦ 직업교과 이수시간 증배</li> </ul>

학교재량 시간	학교재량 시간 없음	학교재량 시간 부여 (연간 68시간) 학교특성 · 창의성 발휘가능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교육과정 운영	운영의 융통성 결여-획일화 단일기준 적용 장애특성, 정도, 개인차 무시 무리한 기대수준 요구 연간·주간시간만 명시	다양한 개인차에 대응 가능 -학습지체아 -특수학교 기준 적용 -능력우수아 -일반학교 교육과정 기준 적용 -중복장애아 -타장애영역기준적용 -연간시간만제시(학교계획존중)
평가의 개선	교육과정 자체의 평가, 지속적 점검 보완 소홀 학생의 점수 서열위주의 학습평가	교육과정 자체의 평가 및 지속적수정보완 지침 제시 학습목표 성취여부 평가 평가결과의 기록개선

## 6) 개별화 교육

### (가) 개념

- 개인의지능, 학습능력, 정서, 학습습관 생활유형이 달라 개인간 및 재인내의 차가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학습환경, 학습방법 및 학습내용을 선택·지도하는 교육

### (나) 개별화 교육계획의 조건

- 참여자 : 특수교사, 담임교사, 부모, 교장(감), 특수교육전문직 등
-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계획시 포함 내용 : 대상학생의 현재 상태, 연간도달목표, 교수방법, 교육의 시작과 종결시기, 평가계획등

### (다) 근거법규

- 특수교육진흥법 제 16조(개별화 교육): 개별화 교육 방법의 강구
- \*외국의 사례: 미국 장애아교육법 (P. L. 94-142)

### (라) 개별화 교육의 장점

- 자기지향, 자율동기 및 자발활동 유발
- 실패감의 최소화
- 학습지진일 경우 용기를 북돋아 주며, 우수아는 삶증을 내지 않음

## 7) 치료교육

### (가) 개념

- 치료교육은 장애로 인한 결손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활동이며, 요육이란 약칭을 쓰기도 함,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보행훈련, 점자지도,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운동기능훈련, 행동·심리치료, 생활적응훈련등이 있음

### (나) 치료교육의 종류

요육실의 종료 :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생활훈련실, 청능훈련실, 감각·운동기능훈련실, 놀이치료실 등

\*면적: 물리치료실 130m<sup>2</sup> 이상, 기타 50m<sup>2</sup> 이상

### (다) 치료교육 담당자

- 요육실기교사: 전문대학 수준에서 양성된 치료교육 관련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요육교사: 정규 4년제대학 수준에서 양성된 치료교육 관련자격을 가지고 있는자
- 개선방안 : 특수교육요원 및 요육실기교사 폐지, 요육교사 운영

\*특수교육요원 및 요육실기교사 폐지 사유

-치료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현장에서의 갈등 해소

(해당분야의 자격증과 교사자격증 동시 요구)

## 8) 직업교육

### (가) 개념

- 장래 희망하는 직업분야를 선택한 자에 대하여 그 특정직업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학습시키는 교육으로 직업준비교육을 의미함

-협의 : 고등학교 이상에서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등 전문교육

-광의 : 특정한 직업에 대한 준비교육

- 특수학교의 직업교육: 맹·농·정신지체·지체부자유학교 고등부의 전문 직업 준비교육.

### (나) 특수학교의 직업보도·훈련실 종류

종류	설치기준	면적기준
목공실, 이료실, 인쇄실, 제복실, 제화실, 세탁실, 사진실습실, 이용실, 미용실, 철공작실, 타자실, 수예실, 시계수리실, 전자조립실, 정보처리실, 자수실, 편물실, 제빵실, 피아노조율실, 전화교환실, 자동차정비실, 도예실 등	교당 2실 이상	각각 60m <sup>2</sup> 이상

### (다) 직업교육 담당자

- 현행 : 실업교과 담당교사

### (라) 개선방안

- 직업담당교사 : 직업교육상담 및 지도담당, 직업재활전문가 자격과 특수학교 직업과

## 목 교사자격필요

- 실업교과 담당교사 : 직업과목 지도 담당, 특수학교 실업교과 담당교사 자격필요
- \*양성대학: 대국대(직업재활과) 강남대, 공주대, 단국대, 대구대, 이화여대, 전주우석대 등(특수교육과)

## (라)장애인을 위한 법정 고용율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제 35조) 및 동시행령(제 34조)
- 내용
- 사업주 : 장애인 상시 근로자 기준고용율 2/10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원의 2/100권장
- ※법정고용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

## 9)특수교육 교원

- (가)개념
-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자질과 장애아동 교육방법 등의 소양을 함께 갖추고 일반학교 또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 (나)주요국가 특수교사 양성개요
  - 영국 : 일반교사 양성과정 수료후 1년의 특별과정 이수
  - 서독 : 도제제도 중심에서 교육대학과 관계 종합대학 합동강의제로 양성방법 변경
  - 일본 : 일부 교육대학에 특수교원양성부(1년)로 운영하다가 전국 교육대학에 특수교육 교원 양성과정 설치 운영
  - 미국 : 능력분위 교사향성 교육과정에 의거 대학 양성과정 수료시 임시자격증 부여 교육경력 3-5년후 석사학위 취득시 영구자격증 부여
  - (다)우리나라 특수교사 양성 연혁
    - 1950 국립 맹아학교 사범과 설치
    - 1961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
    - 1966 국립 맹·농아학교 사범과 폐지
    - 1971 단국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설치
    - 1980 강남사회복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
    - 1981 전주우석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 1983 공주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 1992 특수교원자격 및 양성제도 개선(교육법 개정 '92. 12. 8)

## (라)문제점

- 특수교육 교사양성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없어 양성기관에 따라 배출된 교사의 자질이 서로 다름

## (마)개선방안

- 교사수행능력 중심(교사로서 일반적자질 > 특수교사로서 자질 > 장애별특수교사로서 자질)으로 직전교육기관, 현직연수기관의 교육과정을 표준화 하여 운영함

## 4. 특수학교 운영비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예산

시·도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계	비고
서울	13,068,410 (4,714,573)	2,083,518 (810,166)	337,544 (532,971)	15,489,472) (6,057,710)	
부산	6,852,219	1,016,775	50,700	7,919,694	
대구	6,060,110	700,708	213,280	6,974,098	
인천	3,225,437	454,323		3,679,760	
광주	5,108,447	667,622	11,705	5,787,774	
대전	2,887,952	357,568		3,245,520	
경기	8,040,608 (943,145)	957,428 (1,470,319)	3,290,800 (211,174)	12,288,836 (2,624,638)	
강원	3,959,617	411,552		4,371,169	
충북	4,861,234	680,430		5,541,664	
충남	2,099,185	526,515		2,625,700	
전북	5,178,277	543,206	580,206	6,430,023	
전남	4,114,936	701,330	35,240	4,851,506	
경북	6,332,134	762,489	335,000	7,429,623	
경남	5,582,614	817,409	30,000	6,430,023	
제주	1,645,188	198,373	350,005	2,193,566	
계	84,674,086 (5,657,718)	13,159,731 (2,280,485)	5,978,625 (744,145)	103,812,442 (8,682,348)	

\* '93 예산  
84,849백만원

\* ( )는 국고로 본수에 포함

## 나. 사립교의 지원원칙

- 인력배치기준 등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립특수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함  
(근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 등도 공립교와 동일한 수준임

\* 시 · 도별 특수학교 현황

(1994. 9. 1 현재)				
구분 시 · 도별	학생수 (명)	교사수 (명)	교사1인당 학생 수 (명)	비고
서울	4,947	682	7.3	
부산	1,730	257	6.7	
대구	1,562	250	6.2	
인천	932	128	7.3	
광주	1,020	174	5.8	
대전	814	112	7.3	
경기	2,725	388	7.0	
강원	587	131	4.5	
충북	1,160	154	7.5	
충남	432	72	6.0	
전북	1,030	181	5.7	
전남	900	169	5.3	
경북	1,405	229	6.1	
경남	1,243	222	5.6	
제주	369	64	5.8	
계	20,856	3,213	6.5	

\* 시 · 도별 특수학급 현황

구분 시 · 도별	학급수			학생수		
	국민학교	중 · 고등학 교	계	국민학교	중 · 고등학 교	계
서울	460 (238)	187 (120)	647 (358)	4,403	1,232	5,635
부산	269 (199)	41 (41)	310 (240)	2,982	511	3,493
대구	123 (79)	26 (26)	149 (105)	1,044	210	1,254
인천	124 (76)	17 (16)	141 (92)	1,252	153	1,405
광주	75 (70)	13 (12)	88 (82)	468	107	575
대전	30 (17)	6 (6)	36 (23)	252	46	298
경기	327 (215)	36 (27)	363 (242)	2,714	303	3,017
강원	133 (127)	24 (24)	157 (151)	730	140	870
충북	96 (90)	40 (39)	136 (129)	839	272	1,111
충남	187 (172)	48 (47)	235 (219)	1,607	411	2,018
전북	164 (159)	36 (35)	200 (194)	1,110	235	1,345
경북	229 (169)	23 (23)	252 (192)	1,649	174	1,823
경남	224 (190)	48 (48)	272 (238)	1,597	306	1,902
제주	33 (33)	10 (10)	43 (43)	216	65	281
계	2,741 (2,087)	659 (578)	3,400 (2,665)	22,799	4,870	27,669

\* ( )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

\* 각 시 · 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특수교육기관수, 학급수, 취학율 현황

구분	특수교육기관수		학급수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생수		취학율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시 · 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서울	18	358	411	644	9,968	11,931	4,989	5,864	50.1	49.1
부산	7	240	153	310	3,787	11,590	1,744	3,493	46.0	30.1
대구	8	105	154	149	1,759	1,393	1,562	1,290	88.9	92.6
인천	5	92	105	141	1,282	2,734	1,405	1,405	72.7	55.8
광주	5	82	92	88	1,048	586	586	586	100	100
대전	3	23	82	36	896	298	298	298	90.7	100
경기	14	242	23	362	2,822	3,168	3,152	3,152	96.6	99.5
강원	5	151	242	157	1,029	885	857	875	65.9	96.8
충북	8	129	151	136	1,203	1,289	1,201	1,201	98.8	93.7
충남	3	219	219	235	549	2,259	2,117	2,117	80.7	93.7
전북	8	194	194	200	1,119	1,461	1,345	1,345	92.5	92.1
전남	7	357	357	371	2,298	6,547	2,652	2,652	38.9	40.5
경북	7	192	192	252	1,605	1,811	1,791	1,791	99.8	98.9
경남	6	238	238	272	1,350	2,232	1,963	1,963	32.0	87.8
제주	2	43	43	43	369	284	284	284	100	100
계	106	2,665	2,006	3,396	31,084	48,468	28,298	28,298	70.1	58.4

### ••• 창립7주년 심포지움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일시: 1994. 12. 15 (목) 오후 3:30-6:30

장소: 정립회관 강당

### ■ 사회자

조홍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주제발제

접근권의 실현방안과 전망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법률적 의미에서의 접근권 강경선(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 토론발제

건축가가 본 장애인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전망

조성룡(미래의 건축을 준비하는 모임 · 사무국장)

편의시설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이기하(보건사회부 장애인복지과 과장)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의 참여방안 김선규(대구장애인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문의: 521-5364